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4호의15서식] <개정 2018. 11. 28.>

# 권리 · 의무 승계신고서

| 처리기간 |
|---|
| 7일 |

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고인<br>(승계인) | 상호 | | 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| 성명(대표자) | | | 생년월일 | |
| | 사업장 소재지 | (전화번호: ) | | | |
| 신고내용 | 피승계인 | 상호 | | 사업자<br>등록번호 | |
| | | 성명<br>(대표자) | | 생년월일 | |
| | | 사업장<br>소재지 | (전화번호: ) | | |
| | 승계대상 | 업종 | | | |
| | | 신고번호 | | | |
| | 승계사유 | [ ] 양도 [ ] 사망 [ ] 합병 | | | |
| | 승계 연월일 | | | | |
| | 기타 참고사항 | | | | |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1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□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 의 권리 · 의무를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**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**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첨부서류 | 1. 고형연료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 신고확인증 원본<br>2. 권리 · 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<br>※ 양도나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 · 양수 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등 양도사실이나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, 사망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 | 수수료<br>없음 |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